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별표 1〕 도선료(구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군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3분20초)과 군산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9,7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군산외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17,030원		
	3. 군산항내에서의 이동	68,900원		
대산항	1. 보령도선점(북위 36도11분18초 동경 126도18분27초)과 보령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1,310원		
	2. 신도도선점(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과 대산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5,540원		
	3. 신도도선점과 태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2,400원		
	4. 장안대산도선점(북위 37도02분00초 동경 126도16분30초)과 대산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0,660원		
	5. 신도도선점과 장안대산도선점간의 이동	144,750원		
	6. 장안대산도선점과 말륙도선점(북위 37도07분39초 동경 126도26분41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6,350원		
	7. 말륙도선점과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8,350원		
	8. 보령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9. 대산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10. 태안항내에서의 이동	76,440원		
	11.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내에서의 이동	92,43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동해항	1. 제1도선점(북위 37도32분40초 동경 129도09분02초)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2도선점(북위 37도31분04초, 동경 129도13분04초)과 동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2,560원		
	3. 제2도선점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88,750원		
	4. 제2도선점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81,910원		
	5. 제2도선점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6. 제3도선점(북위 37도25분40초 동경 129도12분52초)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85,420원		
	7. 제4도선점(북위 37도37분22초 동경 129도06분22초)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2,020원		
	8. 제2도선점과 속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29,200원		
	9. 제5도선점(북위 38도11분25초 동경 128도37분22초)과 속초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1,840원		
	10. 호산항도선점(북위 37도11분40초 동경 129도24분30초)과 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3,880원		
	11. 묵호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2. 동해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3. 삼척항내에서의 이동	85,420원		
	14. 옥계항내에서의 이동	132,020원		
	15. 속초항내에서의 이동	151,840원		
	16. 호산항내에서의 이동	132,02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마산항	1. 마산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2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65,8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63,230원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70,750원		
	4.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44분34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58,050원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55,400원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162,930원		
	7.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8.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8도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90,400원		
	9.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128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6,930원		
	10.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128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2,940원		
	11.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0,640원		
	12.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89,340원		
	13.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272,590원		
	14.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50분12초)과 통영LNG 생산기지간 입항 또는 출항	355,620원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90,400원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56,930원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40,640원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189,340원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163,230원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163,130원		
	22. 제1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선박)	215,270원		
	23. 마산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	323,09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목포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27분42초 동경 126도03분45초)과 제2도선점(북위 34도46분00초 동경 126도15분00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6,14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2도선점과 목포신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2,890원		
	3. 제2도선점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04,210원		
	4. 목포신항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8,050원		
	5.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134,890원		
	6. 완도항 도선점(북위 34도17분30초 동경 126도48분30초)과 완도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49,040원		
	7.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96,850원		
	8. 완도항내에서의 이동	249,040원		
부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9도08분47초)과 북내항간 입항 또는 출항	69,890원		
	2. 제1도선점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3. 북내항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4. 제2도선점(북위 35도01분41초 동경 129도02분22초)과 감천항간 입항 또는 출항	87,750원		
	5. 부산신항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5초)과 부산신항만간의 입항 또는 출항	156,410원		
	6. 부산항 및 감천항내 이동	61,800원		
	7. 부산신항만내에서의 이동	61,800원		
	8. 용호부두내에서의 이동	61,800원		
	9. 제1도선점과 용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39,790원		
	10. 다대포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1. 제2도선점과 다대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75,49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여수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41분00초, 동경 127도56분00초)과 여수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4,93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광양항간(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39,450원		
	3. 제1도선점과 광양제철소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42,740원		
	4. 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62,530원		
	5. 제1도선점과 율촌 사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19,820원		
	6. 제1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163,620원		
	7. 제1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59,750원		
	8. 제2도선점(북위 34도44분05초, 동경 127도49분05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64,890원		
	9. 제2도선점과 광양항(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98,250원		
	10. 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01,430원		
	11. 제2도선점과 광양항(GS제2제품부두-송도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18,950원		
	12. 제2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0,540원		
	13. 제2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1,590원		
	14. 제2도선점과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75,890원		
	15. 광양항내와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2,700원		
	16. 제2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1,590원		
	17. 광양항내와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81,040원		
	18. 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14,470원		
	19. 광양항내에서의 이동 (율촌산업단지부두와 태인도시멘트부두 제외)	66,550원		
	20. 여수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21. 하동항내에서의 이동	66,550원		
	22. 제1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305,980원		
	23. 제2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180,58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울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22분36초 동경 129도26분00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6,22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3,870원		
	3.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82,000원		
	4. 제1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6,590원		
	5. 제1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219,820원		
	6. 제2도선점(북위35도22분00초 동경129도27분30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7,040원		
	7. 제2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3,090원		
	8.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2,340원		
	9. 제2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79,220원		
	10. 제2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251,600원		
	11.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4,160원		
	12. 제3도선점(북위 35도20분55초 동경 129도28분50초)과 원유부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9,710원		
	13.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4.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62,780원		
	15.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6.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133,380원		
	17. 울산남신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8. 울산북신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인천항	1. 팔미도선점(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8분18초.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는 북위 37도22분40초 동경 126도32분24초)과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0,45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팔미도선점과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2,570원		
	3. 팔미도선점과 인천 북항 또는 경인항도선점(북위 37도30분36초 동경 126도35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3,940원		
	4. 팔미도선점과 신국제여객터미널간 입항 또는 출항	141,320원		
	5. 장안인천도선점(북위 37도04분40초 동경 126도16분05초,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초)과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팔미도선점과 동백도선점(북위 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194,500원		
	6.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7,670원		
	7. 장안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 출항	191,960원		
	8. 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4,220원		
	9. 인천항 정박지와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47,100원		
	10. LNG선의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북장자서와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83,330원		
	11. LNG선의 북장자서와 인천 LNG 터미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4,110원		
	12. 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또는 및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316,340원		
	13. 장안도선점과 인천신항도선점(북위 37도 19분 10초, 동경 126도 27분 35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233,800원		
	14. 인천신항도선점과 인천신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178,970원		
	15.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외)	97,800원		
	16.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내만)	63,370원		
	17. 경인항도선점과 인천터미널(선거외)간의 입항 또는 출항	253,490원		
	18. 경인항갑문통항구간	253,490원		
	19.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간의 이동	350,980원		
	20. 경인항내에서의 이동	253,49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제주항	1. 제1도선점(북위 33도34분00초 동경 126도33분00초)과 제주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2,03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2. 제주항내에서의 이동	102,030원		
	3. 강정항 도선점(북위 33도12분00초 동경 126도31분24초)과 강정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2,030원		
	4. 강정항내에서의 이동	102,030원		
	5. 애월항도선점(북위 33도31분00초 동경 126도21분18초)과 애월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347,600원		
	6. 애월항내에서의 이동	347,600원		
통영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8도26분52초)과 통영항간 입항 또는 출항	69,700원		
	2. 통영항 내에서의 이동	61,800원		
평택·당진항	1. 장안평택·당진도선점(북위 37도03분22초 동경 126도17분17초, 다만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폭풍주의보 가 발효된 때에는 북위 37도05분58초 동경 126도20분11초)과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99,820원		
	2. 대형 광탄선의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입파도선점간의 이동	163,230원		
	3. 대형 광탄선의 입파도선점과 현대제철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363,690원		
	4.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8,100원		
	5.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2,530원		
	6.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내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211,890원		
	7.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평택·당진항 LNG 터미널 간의 입항 또는 출항	377,830원		
	8. 평택·당진항 내항 및 외항간의 이동	99,830원		
	9.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71,310원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포항항	1. 제1도선점(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과 포항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영일만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영일만항과 포항항간의 이동 4. 영일만항과 정박지간의 이동 5.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6.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133,230원 102,720원 136,960원 97,150원 84,200원 118,12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별표 1〕 도선료(구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비 고〕

15. 대산항 도선구 보령항의 항로여건(어망, 항로폭, 암반 2개소, 저수심)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도선구간 신설 및 여건할증을 적용한다. 단, 항로여건이 개선될 시 여건할증요율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 본 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 과 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대산항	1. 보령도선점과 보령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2. 보령도선점과 중부발전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3. 보령항내에서의 이동(LNG부두, 중부발전부두)	342,000원 290,360원 99,570원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대 상(도선구간)	여건할증요율
1. 보령도선점과 보령 LNG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92%
2. 보령도선점과 중부발전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73%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법적근거>
건설교통부령 제65호(1996. 5. 13.)에 의거 도선료 및 도선선료가 법정요금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부칙 제2항에서 기존 요금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보존 사용하고자 함

제1조(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 ①도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의 도선료가 2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7만원의 최저도선료를 적용한다.<신설 2011. 8. 2. 신고 수리>

제2조(도선료의 할증)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 ①도선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할증도선료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 1. 11. 교통부령 643호>
1.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도선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2.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5할
3.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및 위험물을 부린 후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불활성가스를 채우지 아니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의 2할을 할증한다.
5. 선거에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5할. 다만, 야간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항내이동요금의 7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개정 2000. 11. 15. 변경신고 수리>
6. 선박을 안벽에 접안 또는 이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의 항내이동요금의 3할을 가산한다.<1993. 2. 2. 신설 교통부령 제998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6. 17. 변경신고 수리>

월 별 구 분	야간으로 보는 시간
12월부터 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
2월부터 3월까지	18시 00분부터 07시 00분까지
4월부터 5월까지	19시 00분부터 05시 30분까지
6월부터 7월까지	19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8월부터 9월까지	19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17시 30분부터 07시 00분까지

제3조(도선대기료, 도선취소료, 도선시간변경료 및 긴급도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1조> ①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을 경과하여 대기한 경우에는 그후 경과한 매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마다 9만원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부산 북항과 신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에 한하여 매 30분마다 9만원의 도선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 변경신고 수리>
②도선사는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소급하여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요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취소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8. 12. 5. 변경신고 수리>
③도선사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4회 이상 도선시작시간을 변경 요청하여 도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선시간변경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리>
④도선사는 사전통보 없이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긴급도선을 요청하여 도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도선료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긴급도선료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 9. 18. 신고 수리>

제4조(도선선료) <(구)도선법 시행규칙 제26조> ①도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도선선료는 별표 2와 같다.
②공휴일의 도선선료는 별표 2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3할을, 야간도선선료는 별표 2에 규정된 도선선료에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야간도선선료로 한다.<1993. 2. 2. 교통부령 제998호>
③제2항의 경우에 야간의 시간 구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